

부천시조례정비계획안

의안번호	189
의 건	93. 9. 9
년 월 일	(제22회)

제출년월일 : 93. 7. 29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목 적

- 그 동안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심사 분석 검토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시민편의 위주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의지에 동참하여 변화하고 있는 각종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 추진방침

- 상위법령 정비에 의하여 사문화된 조례 폐지
- 동일사항에 대한 2건 이상의 조례 등을 통·폐합
- 지역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 등의 개정
- 시민편의 생활에 부응하는 조례의 신규 제정

□ 심사방향

-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를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의를 후 대상조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관련 실·과·소별 공무원 출석 및 정비제정대상조례의 결
- 정비대상 및 제정조례안 본회의 상정

□ 세부추진계획

○ 특별위원회 구성

- 명 칭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위원장 : 김덕조
- 간 사 : 강문석
- 위 원 : 7명(민용순, 최용섭, 최순영, 김일섭, 김옥현, 오강열, 장명진위원)
- 소위원회 위원장

- 총 무 소 위 위 회 : 민용순
- 사회산업소위원회 : 김옥현
- 도시건설소위원회 : 오강열

○ 심의대상 : 170건(93. 1. 1일 현재 발효중인 조례)

- 총무위원회 소관 : 90건

-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 44건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36건

○ 심의기간 : 93. 8. - 11. 20(90일간)

(단, 필요시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 소양교육

- 일 시 : 월 1-2회(심의기간중)

- 대 상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9명)

- 초빙인사 : 행정법 행정학 전문인사

- 내 용 : 조례직무와 관련한 소양교육 실시

○ 공청회 개최

- 일 시 : 수시개최(심의기간중)

- 대 상 : 지역적능단체 및 일반시민

- 내 용 : 조례정비와 관련한 시민의견 청취반영

○ 조례정비 실시 홍보

- 기 간 : 93. 8. 20 - 11. 20(90일간)

- 방 법 : 각종회의 및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활용

- 내 용 : 따로 붙임.

□ 소요예산

○ 세미나 개최

- 강사수당 : 420,000원

- 산출기준 : 35,000원×2시간×6회

- 지출과목 :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관서운영비, 기다수당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비

- 식대 및 기타잡비 : 선사용후 정산

- 출장비 등 : 실제 현지 출장시 지출

- 지출과목 :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보상금

□ 기타사항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결된 조례정비 계획이 부천시의회 본회의 승인 전까지는 소관별 조례정비 심의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 활동기간으로 한다.

○ 본 계획의 부천시의회 본회의 승인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개시한다.

○ 각 소위원회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토록 하며, 월1회 이상 심의실적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장에게 제출한다.

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

1. 감리일지 작성 미흡

- 지적사항 : 상주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공상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토록 하여야하나 대부분 구두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어, 시정사항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는 바, 각 공사현장에 통일된 양식을 파급하여 기록정리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함.
- 조치내용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구두조치하여 왔었으나 추후 공사 감리일지의 정리, 기록을 철저히 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지시.

2. 감리사무실 통합운영

- 지적사항 : 연대책임감리 제5조는 감리자가 사업 주체별로 따로 떨어져 각 현장에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어 실제적인 연대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를 한 사무실로 통합 운영하여 서로의 감리현황을 파악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조치내용 : 연대감리는 시공회사와 감리자가 상호 연계계약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로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동감리제도로 변환 운영중에 있어 1개의 사무실에 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수 개의 현장(4-5개 업체)을 통합운영하고 있음.

3. 마무리공사 처리 미흡

- 지적사항 : 공사감리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잘 이루어 지는데 비해 큰 하자발생 요건이 안되는 벽면물탄, 천정물탄, 벽지도배 등 소홀히 생각되는 부분의 마무리 처리가 미흡한 바 입주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 마무리 처리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내용 : 각 현장 및 사업장별로 기능공의 교육을 통하여 품질의 질을 향상토록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4.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배치미흡

- 지적사항 : 건축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건설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선정 상주토록 배치하여 공사추진의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을 선정만 하여 놓고 배치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 및 공사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조치 바람.
- 조치내용 : 점검 당일 기술협의 관계로 출타중이었음을 확인서 청구하였으며 현재 실근무를 하고 있으며 계속 점검을 철저히 하여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음.

5. 감리일지 작성철저

- 지적사항 : 신라아파트 시공자인 극동건설의 상주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매일 감

리환동사항을 감리일지로 작성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나 감리일지의 미작성으로 상주감리 근거가 없어 실시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감리일지 작성 비치토록 조치 바람.

○ 조치내용 : 감리자인 강지압에게 감리일지작성 유지토록 지시.

6. 시정명령 통보철저

○ 지적사항 : 건축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상주감리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동신도시 연대책임감리 제2조는 시공자인 극동건설에게만 통보하였는바 앞으로는 규정대로 이행토록 조치 바람.

○ 조치내용 : 감리자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등 제반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이행하도록 지시.

7. 건축공사 시방서 비치 미흡

○ 지적사항 : 중동신도시 공동감리단 제2조는 우성아파트 건축공사 진척도가 지층을 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 감리의 필수인 시방서가 감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의 감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방서 비치 및 공사감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 바람.

○ 조치내용 : 현장 사무실 및 감리단에 공사시방서를 비치토록하여 시방서에 의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강조지시.

8. 감리자 상주감리 철저

○ 지적사항 :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 뉴서울주택은 현재 공사진척도가 지하실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상주감리자 최병국, 김상진, 최승연, 조한복 모두 상주치 않고 있음이 93년 4월 13일 확인되었으며, 건축감리 최병국은 부실공사시 책임이 없는 무자격자인 강중서를 대리근무케 하였으며 전기, 설비, 토목감리는 필요시에만 상주하고 있으며 이는 상주감리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즉시 조치 바람.

○ 조치내용 : 점검당일 기술협의차 출장중이었으며 추후에는 보고후 출장토록 지시하고 상주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 지적사항 : 유신토건이 시공하는 원미구 준의동 127번지상의 건축공사감리는 주화중, 홍일화, 최성규, 원종목이 상주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93년 4월 20일 확인한 바, 당초 신고된 건축감리자 주화중이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 4월 15일부터 변경된 양인승이 신고미필 상태에서 감리를 하고 있었으며, 전기, 설비의 감리자인 홍일화, 최성규는 상주감리를 하지 않고 필요시만 시공자측의 요구에 의해 감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조치 바람.

○ 조치내용 : 감리 철저토록 통보하여 공사장 상주 지시

9. 안전망 설치 철저

○ 지적사항 : 건축공사시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2층 이상의 공사시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신토건 공사현장은 안전망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건축자에게 낙하시 사고의 위험이 따르니 완

백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조치 바람.

- 조치내용 : 외부 공사로 인하여 일부 철거하였으나 즉시 재 시공 조치.

10.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 지적사항 : 중동신도시 시영아파트 10개동 중 7개동 엘리베이터 용량부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오니 시공자와 협조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 요망.
- 조치내용 : 93. 3. 1부터 승강기 유상보수 실시 후 승강기 운행상 특이한 하자사항 없음.

11. 부실공사 보수

- 지적사항 : 중동 시영아파트 15동 105-705호의 배관다의 배관파이프 불량자재 사용으로 누수 현상 발생하오니 시정조치 요망
- 조치내용 : 난방 유량지시계의 불량으로 고장이 잦았으나 하자보수의 실시로 배관파이프 교체하여 93. 7. 23 현재 하자사항 없음.

12. 비스정류장 횡단보도 설치

- 지적사항 : 중동 시영아파트 정문 앞의 비스정류장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 요망
- 조치내용 : 교통행정과에서 타당성 검토 후 설치 예정임.

13. 건축공사 상주감리 및 현장대리인 상주여부 지도감독 미흡

- 지적사항 : 건축법 제2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의 위반사항을 시정 및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상주치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미흡한 사항으로 시정조치 바람.
- 조치내용 : 현장순찰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상주감리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있으며 추후 현장을 떠날 때는 주택과에 출장보고하여 현장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음.